

의안번호	제 98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4월 일 (제 259 회)

**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 
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07년 4월 5일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 호	98
-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4. 5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제안이유

-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,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4항 신설)
- 나.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(안 제17조제2항)
  - (1)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
  - (2)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,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
- 다.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(안 제21조제10호 신설)
  - (1)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
- 라.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(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)
  - (1)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,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주도록 함

마.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(안 별표2)

- (1)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도록 함
- (2)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

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근무시간)”을 “(근무시간 등)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교육감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
8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
10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
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제5조의2 · 제17조제3항 · 제20조제1항 · 제21조중 “다음 각 호의 1”을 각각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7조중 “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입 양	본 인	14
-----	-----	----

### 비 고

-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,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안에서

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.

-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6. (생 략) 7. 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. 올림픽 ·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하는 때 9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6. (현행과 같음) 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 에 응시할 때 8. 올림픽 ·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. (현행과 같음) 10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 가할 때
제22조(특별휴가)①(생 략)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제22조(특별휴가)①(현행과 같음)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 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③ ~ ⑨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③ ~ ⑨(현행과 같음)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 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제 14조제 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 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 하 같다.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 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유산 · 사산휴가를 주 어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</p> <p>(별표 2) 경조사별 휴가일수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대 상</th><th>일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신 설&gt;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</p>	구 분	대 상	일 수	<신 설>			<p>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</p> <p>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</p> <p>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</p> <p>제27조(준용) 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----- -----</p> <p>(별표 2) 경조사별 휴가일수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대 상</th><th>일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 양</td><td>본 인</td><td>14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,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안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.</li> <li>-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</li> </ul>	구 분	대 상	일 수	입 양	본 인	14
구 분	대 상	일 수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
구 분	대 상	일 수											
입 양	본 인	14										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2조 (근무시간 등) ①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④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
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2 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2. 공무에 관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
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5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6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8. 천재지변·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9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

제7조의3 (특별휴가)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

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####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

제30조 (온라인 원격근무)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##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제29조 (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

1.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
2.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3. 필요한 학력·경력등을 갖춘 자
4. 훈련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
5.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

## □ 모자보건법

제14조 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)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.

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2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3.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
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